

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6. 14.(화) 국무회의 종료 후
-------	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	이진수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	박준상 (02-2100-2992)

**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**  
**- 국가·지자체의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시 보다**  
**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-**  
**- 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-**

## 1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

-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, 사용처,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(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등)하고자 하는 경우,
  -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  
(예외 규정의 유효기간 : ~'22.12.1일까지)
  - \* '20.4월에 지자체(경기도) 건의를 받아 일시적(~'20.9.30일)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고, '21.8월에도 같은 방식(~'22.1.31일)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음
-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,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됩니다.
  - \* 예) 5인 가구(부모 + 자녀 3명)가 116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시, (종전) 최소 **3매 이상의 선불카드**(50만원+50만원+16만원) 필요  
→ (개선) 1개 권종(116만원)의 **선불카드 1매만 필요**

## 2 향후 계획

-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.
  -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\*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- \* '22년 2차 추경안(5.30일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)에 포함, 6월말 지급 개시(잠정)
-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겠습니다.

